

1. 개정이유

상위법령 개정 당시 조문 이동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산재보험관리기구 지원금 신청 인용조문 정비 (안 제47조제1항)

산재보험관리기구 지원금 신청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이동 사항을 반영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
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제1항 중 “영 제56조의12제3항”을 “영 제56조의21제3항”으로 한
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7조(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 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) ① <u>영 제56조의12제3항에 따라 산</u> 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을 신청 하려는 산재보험관리기구는 별 지 제69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 기구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공단 에 제출해야 한다.	제47조(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 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) ① <u>영 제56조의21제3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